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품질인증 도입 등〉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17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적 검토	4
2. 조문별 검토	7
가. 시행계획의 제출 및 심의·의결 절차 등 변경(안 제6조)	7
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안 제6조의2 신설)	13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제공(안 제15조)	15
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표 및 목록 제외 관련 방법·절차 등 변경 (안 제19조·제20조)	18
마.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25
바.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도입(제22조의2 신설)	27
사.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절차 개선 등(안 제32조)	3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3.
3. 회부연월일 : 2024. 8.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으로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클라우드 등 첨단 기술이 경제와 사회 전반을 재편하는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필수적인 요소임.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데이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따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정·개정되지 않도록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저해 요인 평가 제도 도입,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 후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활용의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공데이터 시행계획 제출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8조).
- 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9조의2).
-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 및 정부의 지원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
- 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여 등록한 공공데이터 목록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 마.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 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 사.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아.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 (안 제26조의2).

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 함(안 제30조의2).

차.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주체를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당사자”로 변경하여 규정함(안 제32조).

Ⅲ.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함)은 공공영역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과 정부행정 혁신,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입법취지로 하여 2013년에 제정된 법률임¹⁾.

동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가 있지 않은 한 해당 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의무를 지게 되었음.²⁾

이에 따라 2024년 8월까지 1,015개 기관에서 약 9만 개의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³⁾ 등을 통해 개방하고 있고, 동 데이터들은 약 7,085만 건이 다운로드되어 2,833개의 모바일 앱 등에서 민간 서비스에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69호, 김을동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고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www.data.go.kr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노력과 성과는 OECD가 실시하는 국제 공공데이터 평가에서 4회 연속(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 세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앞선 기반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⁴⁾⁵⁾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주요 통계 현황]

(단위: 개, 건, 기관)

데이터개방 기관 수	데이터 개방 건수	데이터 다운로드 (활용신청) 건수(누적)	공공데이터 활용 개발 웹/앱 건수(누적)
1,015	90,678	70,845,160	2,833

※자료: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주요 통계현황, 2024.8. 기준)

*주: 데이터 다운로드 건수 : ①공공데이터포털 내 다운로드·활용신청 건수 +

②국가중점 목록의 외부 개별데이터 포털의 다운로드·활용신청 건수

그러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개방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 부족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활용이 편리한 방식으로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으며, 또한 공공데이터의 활용 위주에 초점을 두어 온 기존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공공데이터의 생애주기⁶⁾ 전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에 대한 정비와 개인정보의 보호-활용의 양립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음⁷⁾.

4) 남호성, “수요 중심으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 개방 2.0 추진 전략: 행정안전부”, 나라경제 제32권 제6호 통권 제367호, KDI 경제정보센터, 2021, 42p. 참고

최정민,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6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p. 참고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대폭 개편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1위”, 2023.12.22.

5) 2015년부터 2년마다 평가결과가 발표되었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공공데이터평가가 지연되어 4년 만인 올해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음.

6) 생애주기란 데이터의 생성, 수집, 저장, 분석, 활용, 폐기 등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최정민,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6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p.)

7) 최정민, “한국과 미국의 공공데이터 개방 비교 및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제2063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1p. 참

개정안은 법령의 제·개정 시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를 도입하여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제도 발생을 방지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품질관리를 체계화하며,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하고,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의 결정 및 제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고

성욱준, “데이터 생애주기 관점에서 본 공공부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정보학회지 제20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학회, 2017. p.35-36. 참고

2. 조문별 검토

가. 시행계획의 제출 및 심의·의결 절차 변경 등(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 ----- ----- -----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 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 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 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 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

현행법 제8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시행계획은 동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⁸⁾(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라, 국가와

8)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3. 공공데이터의 등록 및 이용 현황
4. 제공 및 이용 가능한 공공데이터의 확대
5.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7. 공공데이터의 제공기술 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8. 공공데이터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10.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11.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등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⁹⁾에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시행하며, 중요한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됨.¹⁰⁾¹¹⁾

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①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이하 “데이터기반행정”이라 한다)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7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5. 16.>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 ④ 전략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 ⑤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전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전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분과위원회 소속으로 안건 심의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데이터기반행정 분과위원회

2.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분과위원회

⑦ 전략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전략위원회에 제출하고,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제7조제3항의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해당 연도 시행계획
3. 해당 연도 공공데이터 관련 예산운용계획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정책의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 (생략)

개정안은 시행계획의 제출 및 심의·의결 절차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현행: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기본계획 수립 절차와 비교해 보면,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 후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¹²⁾ 하게 되는데,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문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¹³⁾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부문계획을 종합(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1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① (생략)

② 기본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매 3년마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⑤ (생략)

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지침을 통보받은 국가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획연도에 시행할 부문계획

2. 기본계획의 추진성과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이를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안을 수정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전략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와 같이 시행계획도 제출처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공데이터법」에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시행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행정안전부에서 통보¹⁴⁾하고 있어, 현제도 각 기관의 시행계획이 행정안전부에 제출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현행법 제8조는 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시행계획의 전략위원회 제출 기관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하고 있음. 제1항과 달리 제2항에서는

14)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긴급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2. 해당 연도에 시행할 소관 분야의 시행계획

3.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 법 제8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와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산상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④ 전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그 해 3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헌법기관”이라 함)가 제외되어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제1항을 일부 수정하여 시행계획의 제출처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는 경우, 현행과 달리 헌법기관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시행계획 심의·의결을 전략위원회에 대한 보고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동법 제6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고 있는바, 안 제8조에서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하더라도 제6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도입(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인데, 정책 및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점검과 개선 권고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요인을 배제하고, 공공데이터 관련 정책의 일관성 및 정합성 확보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참고로, 개정안의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와 같이 법령 제·개정이 특정 정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¹⁵⁾, 「통계법」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¹⁶⁾ 등의 유사 입법례가 있음.

15)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6) 「통계법」 제12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중전의 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도입·변경되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이하 “통계기반정책평가”라 한다)를 통계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보에 관한 사항

2. 행정절차, 행정조직에 관한 사항

3. 민사·상사·형사, 소송절차, 재판 및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통계기반정책평가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통계청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책 및 제도가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그 정책 및 제도 관련 통계의 적합성 여부, 통계 개발·개선 계획 등을 포함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평가의견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통계청장은 통계기반정책평가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통계기반정책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제공(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u>활성화를</u>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u>관련 서비스를</u>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15조(민간협력) ① ----- ----- <u>활성화와 공공의 이익을</u> ----- ----- <u>데이터를 생성·취득하거나 관련 서비스를</u> -----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u>행정적·재정적 지원을</u> 할 수 있다.

현행법 제15조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간협력의 대표적 사례로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약국의 실시간 마스크 재고 확인, 병원의 실시간 잔여백신 확인 및 예약 서비스 제공¹⁷⁾, 전국적인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요소수 판매 주유소 및 재고 현황 확인 서비스 제공¹⁸⁾을 들 수 있음.

동 서비스들은 다양한 민간 앱을 통해서 제공되었는데, 민간에서 재고량

17) 매일경제, “약국 앞에 줄 안서도 되나...곳따서 공적마스크 재고 실시간 확인 가능”, 2020.3.6.

머니투데이, “오늘부터 네이버·카카오 백신 예약 중단... 재난상황서 공적역할 호평”, 2023.1.9.

18) 행정안전부, “요소수 재고 현황, 앱에서 실시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뉴스-정책뉴스, 2021.12.10.

과 관계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부가 데이터를 집계하여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방하면, 다시 민간에서 이를 활용한 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의 생성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이 이루어졌음.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 및 민간협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생성·취득 단계부터 민간과 협력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데이터 생성·취득 또는 관련 서비스 제공의 목적에 현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외에 ‘공공의 이익’을 추가하고 있음.

이는 개방 대상인 공공데이터¹⁹⁾에 공공기관이 취득한 민간의 데이터가 포함되고, 동 데이터를 제3자에게 개방하는 경우 본래 데이터를

19)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3.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생성한 민간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바, 이같은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이익 침해를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민간과의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그 한계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라.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표 및 목록 제외 관련 방법·절차 등 변경
(안 제19조·제20조)

현행	개정안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제21조의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u><삭 제></u> ②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조건----- -----. ③ ----- ----- -----이용조건----- -----누리집을----- ----- ----. ④·⑤ (현행과 같음)

종합 및 공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현행과 같음)

***관련 조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③ (생략)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으며 이-----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외사실 공표일부터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현행법 제18조²⁰⁾~제20조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하고, 등록된 목록 중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를 결정하여 공표하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

20)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의 누락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누락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에 관한 정보를 그 내용별, 형태별, 이용대상별 등 이용에 용이하게 분류하여 관리·제공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가 등록된 목록 중 제공대상 목록을 심의·의결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의결된 제공목록과 이용요건들을 공표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을 공표하고 공공데이터 포털에 해당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 민간에 공공데이터가 제공될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표 및 목록 제외 관련 방법·절차를 변경하고 있는데, 등록된 공공데이터 중에서 제공대상 목록을 결정하고 제공대상 목록에서 제외하는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삭제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²¹⁾.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공표·제외 시 방법·절차 등 비교]

구분	현행	개정안
목록의 등록 (제18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 ↓ <u>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목록 등록관시스템을 구축·운영</u>	(현행과 같음)
목록정보의 공표 (제19조)	<u>전략위원회는</u> <u>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중</u> <u>제공대상 목록을 심의·의결</u> ↓ 행정안전부장관은 <u>전략위원회의</u>	<삭 제> <u>행정안전부장관은</u>

21) 일부 조문을 정비 측면의 개정사항(이용요건→이용조건, 인터넷 홈페이지→누리집, 공공데이터 포털→공공데이터포털)도 있음

	<u>심의·의결을 거친</u>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u>홈페이지</u>에 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대상으로 공표된 공공데이터를 <u>공공데이터 포털</u>에 등록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중 제공목록 및 이용조건 등을 공표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등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 <u>누리집</u>에 공표 ↓ (현행과 같음)
목록의 제외 (제20조)	공공기관의 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행안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 ↓ 행안부장관은 <u>전략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u>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대상과 그 사유를 공표 <u><신 설></u>	(현행과 같음) ↓ 행안부장관은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외 대상과 그 사유를 공표 ↓ 행안부장관은 <u>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u> <u>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u>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결정과 목록 제외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을 삭제하는 것은, 제공대상 목록 공표 측면에서는 「공공데이터법」이 모든 국민의 편리한 공공데이터 이용과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원칙으로 하고,²²⁾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2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이용자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 점²³⁾ 등을, **제공대상 목록 제외 측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게 되는 등 공공데이터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결정하게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삭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목록 제외 대상과 주요 사유를 매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와 관련하여, 삭제되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결정, 제공대상 목록 제외의 두 가지 사항임에 비해, 개정안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대상에서

2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외한 목록에 대하여만 위원회에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공대상으로 결정한 목록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보고사항으로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⁴⁾

둘째,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제외 과정에서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삭제하는 것(안 제20조제2항)과 관련하여, 동법 제28조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제공 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²⁵⁾하고 있는바, 제28조제2항에서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을 함께 삭제해야 할 것으로 보임.

24)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대한 보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표 및 목록 제외를 신속하게 결정한 후에 이를 매년 정기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의 적절성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의의가 있어 보이며, 개정안에서도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목록 공표 및 목록 제외에 관한 사항을 현행과 같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지하고 있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 및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3. 제7조제4항에 따른 부문계획의 작성지침
- 3의2. 제15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개선 또는 시정 권고에 관한 사항
4.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제20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에 관한 사항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6의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각 호의 사항
7.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략)

2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④ (생략)

마.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규정 신설(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0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의 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된 공공데이터를 이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중점개방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있음.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은 현재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정부는 2015년 이후 3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168개 분야의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2023년부터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32개 영역의 데이터 개방을 추진하고 있음²⁶⁾.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는 제도로 반드시 ‘중점개방데이터’라는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중점개방데이터의 편리한 활용을 위한 적절한 제공 방식 마련에 대해 검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항에서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을 위해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에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2015~2016) 건축물정보,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분야
(2017~2019) 공간융합정보, 다국어 5종 음성 정보, 의료영상 정보 등 63개 분야
(2020~2022) 자율주행 통합관제, 119구급정보, 산재심사결정문 등 72개 분야
(2023~2025)

2023년 (12개 영역)	(행정)복지, 교육, 교통, 행정지원, (일자리)취업, 창업 (생활)건강·의료, 주거, 생활인프라, 안전, 환경, (여가)여행
2024년 (11개 영역)	(법률)입법, 사법, 특허, (일자리)귀농·귀촌·귀어, (IT·과학)과학기술, (경제)금융, 부동산, (생활)먹거리, (여가)스포츠, 문화·예술, 취미·여가 활동
2025년 (9개 영역)	(행정)정책, 세금, 모빌리티, 출입국, (IT·과학)정보통신, (경제)공급망, 농축수산 (생활)날씨, 출산·육아

※ 자료: 제4차(‘23~’25)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안)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odsc.go.kr>)

바.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 도입(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²⁷⁾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인증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7)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상호연계성 등에 대한 진단·평가를 통해 민간에 개방하였을 때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고 그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²⁸⁾²⁹⁾으로,

동법 제22조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각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품질 진단·평가,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안 제22조의2)은 동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수준 확보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함)을 규정하려는 것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구체적으로는 해당 공공기관 전체의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28)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4조(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위해 평가대상, 추진체계, 절차 및 기간,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공공데이터의 정확성, 유효성,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

③~⑤ (생략)

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2.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목표 설정, 품질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7. (생략)

품질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2022년 시범사업을 통해 2023년에 도입되어 이미 시행³⁰⁾하고 있으며, 개정안은 이를 법률에 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원활한 융·복합을 위해 품질인증 기준 및 방식 등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서도 유사한 규정³¹⁾을 두고 있음.

30)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신규도입으로 고품질 공공데이터 제공한다, 2023.8.16.

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0조(데이터 품질관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은 데이터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 등에 따라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품질인증의 대상, 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품질기준 및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의 사실조사 절차 개선 등(안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u>행정안전부장관</u>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사건	제31조(분쟁조정의 신청 및 처리기간)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u>분쟁조정위원회</u>는 <u>행정안전부</u>-----

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협조 요청은 해당 분쟁조정을 위한 사건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인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협의를 통한 제공 및 이용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실조사 및 의견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공하여

-----.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

----- 당사자에게 자료-----

----- 위한 -----
-----.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따른 -----
----- 사건의 조정-----

----- 당사자는 -----

-----.

④ -----
----- 당사자-----

-----.

⑤ -----
----- 당사자로-----

-----.

⑥ ~ ⑨ (현행과 같음)

야 하며, 조정안을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공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⑦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따라야 하고 이로 인하여 징계처분 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⑧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

「공공데이터법」 제29조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 중단으로 인해 공공기관과 이용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함)를 두고 있으며,³²⁾ 동법 제31조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3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1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1.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

및 제공중단을 받은 사람이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분쟁조정 신청 이후의 조정 절차에 대해서는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신청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사실조사 과정에서 공공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및 공공기관의 업무담당자를 출석하게 하고, 또한 신청인 및 공공기관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는 등의 내용임.

개정안은 현행 제32조의 분쟁조정 절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사실조사를 명하는 주체를 행정안전부장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조정의 신청 대상기관이 분쟁조정위원회이고, 신청인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에 대한 출석 요구 등도 분쟁조정위원회

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의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2.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변리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명 이상 7명 이하의 조정부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 절차는 비공개로 하되,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⑧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지원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서 하고 있는바,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더라도 조정의 주체는 분쟁조정위원회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³³⁾

둘째, 개정안은 분쟁조정 사건을 조사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분쟁 조정에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³⁴⁾에도 불구하고 개인

3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생략)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⑤ (생략)

「건설산업 기본법」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3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

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인정보가 존재함을 사유로 제공이 거부된 사건의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서 해당 공공데이터의 개인정보 포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사건의 조정을 위한 한도 내에서는 필요한 내용으로 보이며, 개정안도 제2항에서 자료 제출 요청을 사건의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셋째, 분쟁 조정을 신청한 ‘신청인’과 분쟁 조정의 상대방인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변경하고 있음. 이는 조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하고, 사실조사 시 신청인에게도 자료 제출 요청이 가능함³⁵⁾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³⁶⁾

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5) 현행은 사실조사 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36) 「개인정보 보호법」 및 「건설산업 기본법」 등에 유사 입법례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45조(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72조(분쟁조정 신청의 통지 등) 위원회는 당사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을 신청받으면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하며, 상대방은 그 조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73조(조정거부 및 중지) ①·② (생략)

③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訴)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소 제기로 인하여 조정이 중지된 사실을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 당사자 또는 분쟁 관련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39